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시 관할 중재부 지정 관련 〉

■ 나경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291호)

2025. 1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시 관할 중재부 지정 관련(안 제19조)	3
※ 참고자료	
1. 타부처 및 협회 등 의견	7
2. 21대 국회 유사 법률 발의 및 심사 현황	7
3.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현황	8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나경원의원 등 10인

나. 제 출 일 : 2025. 9. 25.

다. 회부연월일 : 2025. 9.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권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정의 관할권은 언론사의 소재지를 관장하는 중재부에 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인터넷 언론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하나의 사안에 대해 전국 각지에 소재한 다수의 언론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보도를 동시다발적으로 송출하는, 이른바 '뉴스 확산' 현상이 일상화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언론사 소재지 중심의 관할 규정은 언론보도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음.

먼저,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허위·왜곡 보도를 한 다수의 언론사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 각지의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물리적·시간적 부담을 감당해야 함. 이는 피해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비용과 심리적 고통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2차 피해'를 초래함.

또한 이러한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일부 언론사에 대한 조정 신청만 진행하거나 아예 권리구제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등 절차상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음.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에 의한 피해로부터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함.

게다가 동일 사안에 대한 조정절차가 여러 지역의 중재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판단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중재위원회의 행정 효율성도 크게 저하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정신청 시 피해자의 관할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중재부를 지정하도록 하여 언론보도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Ⅲ. 검토의견

1.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시 관할 중재부 지정 관련 (안 제19조)

가. 개정안 요지

-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중재부를 지정하도록 명시(안 제19조제1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조정) ①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제19조(조정) ① 조정의 관할권은 조정의 대상이 되는 언론사등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하고,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다만, 피해자의 관할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의 「민사소송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재부를 해당 조정의 관할 중재부로 지정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② ~ ⑨ (생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⑩ 조정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u>구술신청</u> 의 방식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⑩ ----- ----- <u>관할</u> <u>변경 및 구술신청</u> ----- ----- ----- --.

다. 검토사항

- 현행제도에서 정정보도청구등 관련 분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할 경우 조정 관할권은 해당 언론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하게 되어 있어, 다수 언론사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언론사 소재 관할 중재부별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중재위원회의 행정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 아울러 복수의 조정신청시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 중재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언론조정중재규칙에서 「민사소송법」 제29조¹⁾의 ‘합의관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양측의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 내용에 따라 관할을 변경할 수

1)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이하생략)

있도록 규정하는 등 보완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나, 피해자 중심 구제제도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중재부를 지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중재위원회의 행정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어 보임.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법이 민사소송법 제2조를 준용하여 피고인 언론사의 소재지를 관할 중재부로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소재지로 관할을 변경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고의 방어권 원칙에 역행하여 언론사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다수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등 관할 중재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행제도상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관할 중재부를 변경 가능한데, 이를 오로지 피해자의 편의에 따라 관할 중재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무분별한 관할 변경 신청이 발생할 수 있고, 언론사의 대응을 경직시켜 오히려 원활한 조정이 어려워지는 등 절차적 혼선 및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는 신청인이 각 중재부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중재부 판단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어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현행 언론조정중재규칙 제6조제1항이 피고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로 정하는 민사소송법 제2조를 준용하여 언론사등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재부가 관할권을 갖도록 하고, 민사소송법상 합의관할 절차를 준용하여 양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관할 중재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관할 변경이 실무상 이뤄지고 있어 다량 신청의 경우에도 신청인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관할을 지정하여 신청하고 중재부가 이를 지정하도록 별도의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80

참고 1

타부처 및 협회 등 의견

○ 협회 의견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언론중재위원회 (2025.10.24.)	• 개정안은 신청인이 각 중재부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중재부 판단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현행 「언론조정중재규칙」 제6조제1항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로 정하는 민사소송법 제2조를 준용하여 언론사등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재부가 관할권을 갖도록 하고, 민사소송법상 합의관할 절차를 준용하여 양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관할 중재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처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관할 변경이 실무상 이뤄지고 있어 다량 신청의 경우에도 신청인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관할을 지정하여 신청하고 중재부가 이를 지정하도록 별도의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 2

21대 국회 유사 법률 발의 및 심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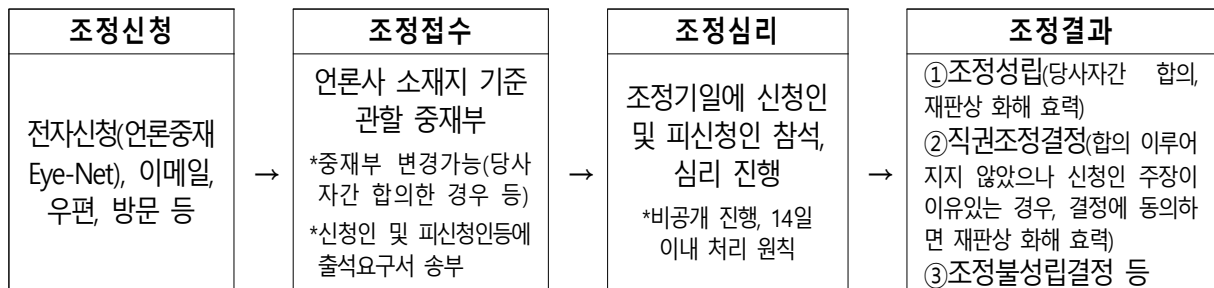
법률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내용	심사경과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119339)	정우택 (‘23.1.5)	피해자가 관할 중재부를 변경신청하는 경우 피해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언론중재위 관할 중재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의무 아닌 재량)	(상임위) •상정(‘23.2.9)	-

참고 3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현황

□ 조정 개요

- (내용) 언론보도로 피해자와 언론사 간 발생한 분쟁을 중재위가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이끌어내 분쟁을 해결
 - *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뉴스포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에 의한 보도
- (청구권 종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 (조정 절차)



□ 조정 현황

- 중재부별 접수현황 * 전국에 18개 중재부 운영(서울 8개+지역 10개)

(단위 : 건)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2020	3,924	2,850	60	117	100	56	413	45	47	103	94	39
2021	4,278	2,969	108	153	131	52	390	28	61	149	174	63
2022	3,175	2,377	55	114	81	60	250	25	39	50	99	25
2023	4,085	3,114	23	123	117	67	357	33	82	98	58	13
2024	3,937	2,923	69	126	111	82	226	38	101	158	61	42
2025.9	2,064	28	116	108	123	150	25	37	59	88	12	12

○ 처리결과

(단위 : 건)

연도	청구 건수	처리 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2020	3,924	1,245	166	99	891(11)	275	34	1,029	185	67.8
2021	4,278	1,221	146	73(4)	894(16)	596	132	838	378	62.7
2022	3,175	949	69	34	684(8)	450	193	686	110	67.6
2023	4,085	1,599	61	34(3)	793(20)	145	113	1,152	188	74.1
2024	3,937	1,452	88	66	649(14)	336	38	1,028	280	72.5
2025.9	2,810	1,030	13	17	469(12)	214	41	584	147	72.5

*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 된 건수

* 피해구제율 =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취하(구제)+그 외 피해구제 건 / 전체 조정청구건수-(기각+각하)×100

* '25.9월 기준 계류 중인 294건은 처리결과에 미포함